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51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엄태영 · 안철수 · 이만희
진종오 · 박성민 · 박덕흠
김상훈 · 김석기 · 서천호
유상범 · 박충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됨.

그러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 및 기업적 경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등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3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 ----- ----- ----- . 이 경우 제1호, 제2호,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3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